

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

□ 제안이유

-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(2003-2006)을 수립하여 파주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1. 목표설정의 기본방향

- 지역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 의료사업을 개발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 건강향상을 도모하며 보건소 및 시 보건조직의 업무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지역의 현황과 변화추이 진단

- 인구변화 및 구조, 의료시설, 보건진료사업, 전염병 발생상황등을 진단하여 향후 사업계획에 반영

3. 제2기(1998-2002)사업추진 자체평가

- 제2기 사업계획에 의한 실적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향후 4년간의 역할 변화 및 사업계획 방향 설정

4. 제3기(2003-2006)사업계획 수립

가. 생의 주기별 보건사업추진(5단계)

- 영유아 보건사업

- 학생 보건사업
- 성인 보건사업
- 모성 보건사업
- 노인 보건사업

나. 서비스별 보건사업 추진

-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사업
- 구강보건 및 급만성전염병관리, 의·약물관리
- 정신보건 및 재활보건사업
- 만성퇴행성질환사업 및 방문보건사업
- 저소득층보건사업
- 각종 실험 및 검사

다.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

- 조직 및 인력
- 시설 및 장비

라.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

□ 기 타

-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 및 파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된 파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통해 2002. 9. 27 심의를 필하였으며 본 계획서 세부내역은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(안)과 같음.

□ 검토의견

가. 법령적합성

- 동 승인안건은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거 파주시역 보건시책의

장기적이며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립한 『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서』를 동법 제3조제1항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

- 동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계획수립을 완료한 후 시의회 승인을 받기 전에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 및 파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의 자문기구로 구성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, 금년 9월 27일자로 심의를 득하였으므로 관련법령상 적합성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지역보건법[일부개정 1999.2.8 법률 제5852호]

第3條(地域保健醫療計劃의 수립등) ①市長·郡守·區廳長(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. 이하 같다)은 地域住民, 保健醫療關聯機關·團體 및 專門家의 의견을 들어 당해 市·郡·區의 地域保健醫療計劃을 수립한 후 당해 市·郡·區議會의 議決을 거쳐 特別市長·廣域市長·道知事(이하 "市·道知事"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지역보건법시행령[일부개정 1999.8.7 대통령령 제16526호]

제2조(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등) ①지역보건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및 시·군·구(자치구에 한한다. 이하 같다)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.

1.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2.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3.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
4. 기타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나. 내용타당성

- 금년도 작성 제출된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개년간 추진될 중기계획으로서 “지역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하여 보건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서 주민건강을 향상시킨다”는 목표를 두고 있으며,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과제로 ①지역특성을 정확히 진단하여, ②보건의료기관을 재정비하고, ③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, ④보건소 의료장비를 대폭 보강하는 한편, ⑤민간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의 연계·조정을 통하여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것임.

- 동 계획의 작성체계와 내용은 지역보건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 것으로 작성개요를 살펴보면
 - 첫째,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적
 - 둘째, 지역현황과 전망
 - 셋째, 보건소업무의 현황과 향후 4개년간의 역할변화와 사업계획방향
 - 넷째,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
 - 다섯째,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과 발전방향 등파주시의 보건의료관련 제반 현황과 계획을 수록하고 있음으로 관련법이 요구하고 있는 계획수립의 이행절차나 그 내용면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지역보건법[일부개정 1999.2.8 법률 제5852호]

第4條 (地域保健醫療計劃의 내용) ①地域保健醫療計劃에는 다음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保健醫療需要 測定 외 4개호(생략)

지역보건법시행령[일부개정 1999.8.7 대통령령 제16526호]

제3조 (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)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·군·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
2. 지역현황과 전망
3.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
4. 법 제9조의규정에 의한 보건소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
5.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
6.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성 확보계획

서 면 답 변 서

질문의원	최 승 진	답변부서	보건소
질문제목	지역보건의료기관 시설 정비 계획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제출		
<p>□ 질문요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중 파평보건지소와 파주보건지소의 시설 개축 계획이 되어 있는바 계획에서 미반영된 보건지소의 제외 사유 ○ 보건지소 건물 개축 계획 수립시 관련 시설 안전 진단을 실시하였는지, 안전진단을 실시하였다면 안전진단 실시 결과를 서면 제출 바람. <p>□ 답변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관내 10개 보건지소중 파평보건지소와 파주보건지소는 건물이 노후되어 우기에 누수가 발생되고 벽에 금이가는등 건물상태가 불량해서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그 외 보건지소는 현상대로는 문제가 없으므로 계획에서 제외되었음. (교하보건지소의 경우 인구증가로 인하여 교하읍 청사 이전 신축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계획에서 제외) ○ 건물 안전 진단 결과는 파주건설14000-10403(2001.11.13)호에 의거 재난 관리 대상 시설 일제조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였으며 조사 당시 파평보건지소 건물은 문제가 없었으나 조사이후 건물 누수로 인하여 보수 비용이 증가하고, 벽등에 곰팡이가 피는등 건물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였음. <p>붙 임 2001년도 재난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결과서사본 1부. 끝.</p>			

작성자 보건소장 허길자 (인)

파 주 시

우 413-020 파주시 금촌동 963-1,4번지 전화 940-4881 (행) 4881~4 FAX 031) 940-4889
 보건소 소장 허길자 담당 조옥래 담당자 우종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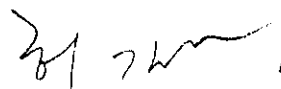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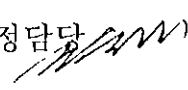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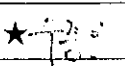
문서번호 보건 65300 - /0301

시행일자 2001. 11. 26. (년)

(경 유)

발 음 건설과장

참 조

취급		시 장	
보존	년		
부시장			
소 장	전 결	●보건행정담당 	
기안	★  이	협조	
심사자		심사일	

제 목 2001년도 재난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및 하반기 재난관리대상시설 현황 제출

1. 경기 건설14000-14576(2001. 10. 26)호 및 건설 14000-10403(2001. 11. 13) 호와 관련입니다.

2. 위 호와 관련하여 재난관리법 제18조(재난의 예방) 및 동법시행령 제 20조(재난위험시설 또는 지역의 지정) 규정에 의거 재난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를 붙임과같이 제출합니다.

붙 임 재난관리대상시설물 일제조사서 1부. 끝.

보 건 소 장

2001년 재난관리대상시설 · 지역 현황

□ 시설개황

○ 관리기관 : 보건소

○ 조사시점 : 2001. 11.

○ 대상시설 :

- 시설물 0 개소, 건축물 18개소

- 중점관리대상시설 18개소, 재난위험시설 0 개소

□ 등급별 현황

(단위:개소 · 동)

구분	관리대상 시설물	중점관리대상				재난위험시설		
		소개	A급	B급	C급	소개	D급	E급
합계		18	8	8	2			
시설물								
건축물		18	8	8	2			

□ 건축물 세부내역

<재난위험등급 : A 급>

시설유형	시설명	위 치	시설현황	관리주체	지정년월일	사업비(백만원)	조치사항
지방 공공 청사	보건소	금촌동953-1,4번지	1999년준공 2층(지하1층) 2,054.91㎡	파주시		2,700 (0)	
"	문산 보건지소	문산읍문산리8-2외 1필지	1987년준공 2층(지하1층) 165.48㎡	"		160	
"	광탄 보건지소	광탄면신산리134-1	1995년준공 2층(지하1층) 126㎡	"		120	
"	탄현 보건지소	탄현면축현리877-1	1987년준공 2층 157.92㎡	"		150	
"	월릉 보건지소	월릉면위전리594-3 외1필지	1988년준공 1층 160.87㎡	"		160	
"	상현보건 진료소	적성면어유자리 315-3	85,97년준공 2층 115.92㎡	"		70	
"	야당보건 진료소	교하면상저석리 산38-5	83,97년준공 2층 117.86㎡	"		80	
"	용담보건 진료소	법원읍용담리 327-17	1987년준공 2층 113.36㎡	"		80	

□ 건축물 세부내역

<재난위험등급 : B급>

시설유형	시설명	위 치	시설현황	관리 주체	지정 년월일	사업비 (백만원)	조치사항
지방 공공 청사	법원 보건지소	법원유법원리376-1	1985년준공 1층 148㎡	파주시		100	
"	조리 보건지소	조리면봉일천리 188-7	1985년준공 1층 157.6㎡	"		150	
"	직성 보건지소	직성면마지리48-1	1986년준공 1층 157.62㎡	"		150	
"	파평 보건지소	파평면금파리284-1	1989년 1979년준공 1층 231.1㎡	"		220	
"	양장보건 진료소	광탄면양장리205-8	84,97년준공 2층 118.26㎡	"		80 (1.5)	
"	문지보건 진료소	탄현면문지리251-1	85,95년준공 2층 118.43㎡	"		60	내부수리중
"	백연보건 진료소	군내면백연리 480-19	1987년준공 1층 82.08㎡	"		70	
"	마산보건 진료소	파평면마산리387-5	1983년준공 2층 121.14㎡	"		60	

□ 건축물 세부내역

<재난위험등급 : C급>

시설유형	시설명	위치	시설현황	관주체	지정 년월일	사업비 (백만원)	조치사항
지방 공공 청사	교하 보건지소	교하면교하리387-1	1984년준공 1층 153㎡	파주시		150	예산확보후 수리에정
"	파주 보건지소	파주읍파주리429-1	1987년준공 1층(지하1층) 154.04㎡	"		150	예산확보후 수리에정

